

3. 국민의 생명 · 신체 ·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(법 제9조 제1항 제3호)
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* 비공개 이유 :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▶▶ 비공개 대상 정보

비공개유형	비공개 대상 정보
· 경비일지, 순찰일지, 경비시스템 관리일지	
· 다중이용시설* 도면, 구조도	창원시가 관리하는 다중이용 시설 및 교량안전도 조사 결과는 국민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공개 필요
· 위법, 부정행위 등의 신고, 통보자 인적사항	
· 여권, 인감관리대장	
·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	
·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	